

○金熙健委員 이것은 質疑內容이 아니고, 우리 委員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사실은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다니는 애들을 參考書 살 돈이 없어 가지고 가서 복사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 20원 30원하는 돈이 이것을 좀 한 1년이나 2년쯤 있다가 引上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意見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이상으로 質疑하실 분이 안 계시면 質疑와 答辯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件에 대해서…… 그러면 金熙健委員님의 설명에 대해서 議題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再請이 있어야 됩니다. 再請하십니까? 再請을 해야 議題로 성립되니까, 再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金熙健委員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題가 안 되었으니까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종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异議없으십니까?

○張精一委員 异議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張精一委員님,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精一委員 張精一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中 附則 「이」條例는 1992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를 「이」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執行部에서 提出한 原案과 같이 修正動議합니다.

○委員長代理 金相復 張精一委員으로부터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案中 附則 「이」條例는 1992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를 「이」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하자는 修正動議의發議가 되었습니다. 이 动議에 再請하시죠?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張精一委員님이 發議한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修正動議는 議題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죠? 議題로 성립된데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張精一委員님이 修正動議하신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中 附則 「이」條例는 1992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를 「이」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异議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증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증 “다만 어린이도서관과 신문, 아동, 주부의 열람실 및 순회문고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와 제1호를 삭제하고, 제3항증 “전” 및 “1회 또는”을 삭제하며, 제4항증 “전 각항의”를 “제1항 제2호 및 제5항의”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일반복사기에 의한 복사료

복사기 규격(단위:mm)	1매당 복사료
A3(420×297)	30원
B4(364×257)	
A4(210×297)	20원
B5(182×25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1時 25分)

○委員長代理 金相復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서울特別市教育監을 代理해서 管理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